

고용노동부 운전직공무원(운전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12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

1 임용예정인원(1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기관(근무지)
운전A	운전서기보	1명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적용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서울, 세종 등)

※ (유의사항)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2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운전A	운전	운전서기보	○ 행정지원을 위한 관용 차량 운행 및 차량관리 * 사람과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송하는 일을 하며 이를 위해 각종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운행 전후의 차량 상태 점검(안전 및 청결) 등 ○ 기타 행정 보조 업무 등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 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공통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양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 자격 기본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6. 1. 6.) 기준]

기본요건	○ 1종 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면허에 한하며, 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할 수 없음, 군 운전면허증 불인정
------	--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5. 12. 17.) 기준]

우대요건	○ 1종 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 후 운전 분야 근무경력(기간별 차등 배점) ○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없는 자(법규 위반 건수에 따라 차등 감점) ○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기사·기술사 이상 산업기사·기능사 건별 종류별 차등 배점) * 자격증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 정보처리·사무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기사·기술사 이상 산업기사·기능사 및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통합 전 1급) 등 종류별 차등 배점) * 자격증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 3급 이상(급수에 따라 차등 가점)

[우대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감점) 요건 관련

① 운전직 근무경력(합산경력 1년 이상 최대 5년까지 근무경력을 기간별 차등 배점)

- **(경력 인정)** 1종 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후 국가(군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개인사업체에 소속되어 여객운송(운행)을 주된 업무로 한 운전직 근무경력만을 인정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재직) 증명서를 통해 ① 근무기간, ② 소속, ③ 직위(급), ④ 담당업무, ⑤ 운행차량의 종류 및 인승, ⑥ 주당 근무시간(전일제 여부, 근무시간) 등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아래 예시 참조), 통상적인 경력(재직)증명서 양식에 위 ①~⑥이 나타나지 않거나 경력 기관의 시스템 문제로 기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가로 별도 경력(재직)증명서를 사용하여 증빙 필요(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예시) ① '21.1.1~24.12.31. ② (주)△△ ③ 사원 ④ 비서(운전) ⑤ 승용자동차 ⑥ 전일제(주 40시간) 근무

↳ 근무기간은 전임근무의 경우 전부,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경력증명서 상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담당업무는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운전직렬 명시만으로 인정 불가)

- **(경력 불인정)**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굴삭기, 포크레인 등), 이륜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을 부수적 업무로 수행한 경우, 여객 운송이 주된 업무가 아닌 경우,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근무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다음 서류로 보완하여야 함

- ▲ ① 폐업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①~④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해당 경력은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기간)**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군 운전경력)** 1종 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경력이 '군운전경력확인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등으로 증빙된 경우로서 병력운송경력에 한해 인정

* 화물·특수·이륜자동차는 운전경력 불인정, 수송병과 또는 운전병 주특기 만으로 인정 불가

② **교통법규 준수 이력**(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5년 역산기간동안 교통법규 위반 건수에 따라 차등 감점)

-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받은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 운전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시험공고일 이후 발급받고**, 조회 희망기간은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 모두 「전체 경력」으로 발행

↳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공고일 이전 발행일자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시, 「전체 경력」으로 발행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관련 항목을 최하점(최대감점)으로 산정

*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의 경우 횡수와 관계 없이 최대감점 처리

③ **자격증**(기사·기술사 이상·산업기사·기능사 등 건별·종류별 차등 배점)

-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舊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포함)

*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 **(정보처리·사무관리 관련 관련)**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통합 전 1급)

*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 **가산점 관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급수에 따라 차등 가점,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 참조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평정요소

- ① 자기소개서 / 직무수행계획서, ② 운전직 근무경력, ③ 교통법규 위반건수(감점), ④ 자동차 정비검사 자격증, ⑤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⑥ 한국사능력검정시험(가점)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통해 소통·공감, 헌신·열정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평정요소별로 “상”, “중”, “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⑤ 직무전문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 일정

구 분	일 정(예정)	내 용
채용공고	'25.12.05.(금)~12.17.(수)	· 나라일터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원서접수	'25.12.15.(월)~12.17.(수)	·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등기우편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공고	'25.12.26.(금)	· 나라일터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개별통보
면접시험	'26.01.06.(화)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최종 합격자 발표	'26.01.19.(월)	· 나라일터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개별통보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나라일터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 개별통보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2025. 12. 15.(월) ~ 12. 17.(수) 18:00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044-202-7869)
 - 등기우편 접수 주소 : (우)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층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운전직공무원 채용담당(채용 응시원서 재중)
-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통보 예정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예정

나. 제출서류 각 제출서류별 세부 내용, 유의사항 등은 "붙임3" 참조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구 분	서 류
필수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서식 제1호), ②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2호), ③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3호) ④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4호)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5호)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6호)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7호) ⑧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⑨ 운전경력증명서 1부(정부24 발급)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⑩ 운전직 경력(재직) 증명서 1부(별지서식 제8호) ⑪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 자동차정비·검사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사본 1부 ⑫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만 해당, 병역사항 포함 발급)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탬플러 사용금지)**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2026년 2월 예정(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9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 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 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 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 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044-202-7869)로 문의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 ①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② 2024년 6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이 법 시행일 전에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종전의 「아동복지법」(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포함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를 포함한다]
- ③ 2024년 6월 1일 전에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24년 6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종전의 「아동복지법」(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포함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를 포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기관(근무지)
운전A	운전	운전서기보	1명	고용노동부 (서울, 세종 등)
NCS 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9. 운전·운송	01. 자동차운전운송	01. 자동차운전운송	01.여객운송
주요 업무	○ 행정지원을 위한 관용차량 운전 및 차량 관리 * 사람과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송하는 일을 하며 이를 위해 각종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운행 전후의 차량 상태 점검(안전 및 청결) 등 ○ 기타 행정 보조 업무 등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대민 친절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관찰력, 자기관리, 준법의지, 대인관계, 기술적 전문지식 등			
필요 지식	○ 도로교통 법규, 지침 및 규정에 관한 지식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유형별 대응요령에 관한 지식 ○ 차량 사전 정비에 관한 지식(오일 교환주기, 누유/누수 가능 부위, 배터리 용량, 타이어 공기압 및 손상 등) ○ 응급조치 및 비상상황 행동요령			
응시 자격 요건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자격증	○ 1종 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면허에 한하며, 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할 수 없음		
우대요건		○ 1종 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 후 운전 분야 근무경력(기간별 차등 배점) ○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없는 자(법규 위반 건별 차등 감점) ○ 자동차 정비검사 자격증 소지자(기사·기술사 이상·산업기사·기능사 건별 종류별 차등 배점)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기사·기술사 이상·산업기사·기능사 및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통합 전 1급) 등 종류별 차등 배점)		
가점요건		○ 한국사능력검정 3급 이상(급수에 따라 차등 가점)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우대가산요건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판단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필수 제출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서식 제1호)	○ 응시원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는 서류를 체크하여 제출
	2.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공고기간내 발급된 수입인지만 유효, 미부착시 서류전형 탈락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가족관계증명서)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 경력은 가능한 상세히 기재(경력사항은 증빙서류 첨부시에만 인정)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A4 3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A4 3매 이내로 작성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자필 서명 필수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7호)	○ 자필 서명 필수
	8.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9. 운전경력증명서	○ 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로 발급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하거나, 경찰서에서 발행 ※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증명서인 경우 또는 조회기간이 전체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법규 위반건수'는 최하위(최대감점) 점수 부여

구 분		내 용
해 당 자 에 한 해 제 출	10. 운전직 경력(재직) 증명서 1부 (필요시, 별지서식 제8호 활용)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근무기간(연·월·일)·주당 소정근로시간·직위(급) 및 담당업무, 발급기관·발급자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경력증명서에 운전직 근무경력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별지서식7호를 경력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11. 자동차 정비·검사 자격증 사본	○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구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포함) ※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12.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사본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 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통합 전 1급) ※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1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시험에 한함 ※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14.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만 제출(병역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응시번호	응시등급 (채용분야)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응시자 미기재	운전9급	홍길동	1988. 1. 1.	010-1234-5678
	운전직공무원			

□ 제출 서류에 ✓ 표시 후 아래의 순서대로 집계 또는 클립으로 편철

※ 모든 서류에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형식적 체크 지양(반드시 서류 확인 후 체크할 것)

목록	제출 여부
1. 응시원서 1부(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정부수입인지 포함)	☐ 제출 ☐ 미제출 정부수입인지 첨부 여부 ☐ 제출 ☐ 미제출
2. 이력서 1부(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 제출 ☐ 미제출
3. 자기소개서 1부(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 제출 ☐ 미제출
4. 직무수행계획서 1부(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 제출 ☐ 미제출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 제출 ☐ 미제출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 제출 ☐ 미제출
7. 운전면허증 사본 1부(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 제출 ☐ 미제출
8. 운전경력증명서 1부(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 제출 ☐ 미제출
9. 운전직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10. 자동차 정비·검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11.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1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13.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만 제출)	☐ 제출 ☐ 미제출

<별지서식 제2호>

(앞 면)

응시원서 (원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본인은 고용노동부 운전직공무원(운전9급)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응시원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운전서기보 / 운전A	
응시자격		1종 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운전서기보 / 운전A	
응시자격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 작성요령

-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직급과 지원 코드 기재
(예) 운전서기보 운전A
- ②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③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④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⑤ 정부수입인지: 우체국 및 온라인(<https://www.e-revenuestamp.or.kr>) 등에서 구입
 - 공고기간 내 발급받은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부착 또는 첨부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가족관계증명서)으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 정부수입인지 미 부착(전자수입인지 경우 미제출) 시 원서접수 불가(서류전형 탈락)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분야	운전서기보	성명	
------	----------	------	-------	----	--

2. 응시자격

운전 면허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3. 우대 및 감점 사항

운전직 근무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 (○○과)	2021.1.1 ~ 2024.12.31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2021.5.1~2022.1.1.(육아휴직)		과장 (4급)	*운전직의 경우 '운행차종(인승)'기재예) 대형버스(45인승)	전임/ 비전임 (주00시간 근무)
교통 법규 위반등 경력	교통위반 발생일자		위반내용(법조항)		비 고	
					최근 5년간(2020. 12. 18.~2025. 12. 17.) 교통법규 위반 내역	
					* 2건 초과 시, 줄 추가하여 전체사항 기재	
자동차 정비· 검사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정보 처리· 사무 관리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4. 가산점

한국사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시행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인적사항 지원자의 성명 등 기본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

경력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주당 근무시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 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 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2년 인정

교통법규 위반 경력 사항 운전경력증명서상 교통법규 위반 경력 사항을 기재

- 본 채용공고의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 최근 5년간의 교통법규 위반 내역을 기재

자격증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작성

- (응시요건) 운전면허증
- (우대요건)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 명·취득 (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	-----------	--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3매 이내로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글자크기 제목 13p 본문 12p, 줄간격 160%)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글자 크기 제목 13포인트, 본문 12포인트, 줄 간격 160%로 작성

2025. . .	작성자:	(서명 또는인)
-----------	------	----------

직무수행 계획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	--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3매 이내로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글자크기 제목 13p 본문 12p, 줄간격 160%)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글자 크기 제목 13포인트, 본문 12포인트, 줄 간격 160%로 작성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같은 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 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경력사항 등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서명)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별지서식 제8호>

경력(재직) 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증 명 사 항	재 직 기 간		소속 및 직위(급)	담당업무내용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주 00시간 (주당 소정 근로시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예) 차량 운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 하였는지, 차종(인승) 등 담당 업무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4월

기 관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

발 급 자

소속

직 위

성명

인

연락처

- 동 서식에 의한 증명서는 일반 경력증명서로는 운전직 근무경력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사용하며, 시험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됨
-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닐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기관 주소, 대표자, 발급자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수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사업장 수 만큼 경력증명서 발급받아야 함